

제421회 임시회  
'24. 10. 11.(금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 
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상식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4년 10월 2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
3. 제안사유

- 경제적·심리적·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을 통해 건강한 출산 지원 및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할 지역상담기관 지정·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7조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출배경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, 인권을 보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.
-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,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, 이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또한 명확하다고 할 것임.
- 하지만, 경제적·사회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기되는 영아의 수는 매년 1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, 특히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<sup>1)</sup>.
- 특히, 지난 해 6월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냉장고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2015~2023년 기간 출생 미등록 아동은 2천 명이 넘고 이 가운데 262명이 사망한 사실도 드러남.<sup>2)</sup>
- 충청북도에서도 지난 해 태어난 기록은 존재하지만, 출생 신고가

---

1) 2011년~21년 발생 영아유기 범죄(영아유기죄, 교사·방조·학대, 유기치사상 포함) : 1,898건  
(경찰청 발표 자료 / 22.12.22)

2) - '태어났지만 사라졌다. 유령이 되어버린 아기들' (오마이뉴스, 2023. 10. 15.)  
-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 (자료: 보건복지부)

안 된 상태로 사라져 버린 '유령 아동'이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음.<sup>3)</sup>

- 이렇게 심각한 신생아 유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체계가 절실한 상황으로, 지난 해 국회에서는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을 제정했고, 지난 7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.
- 또한,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'의료기관 출생통보제'와 '보호출산제'도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.

### <참고 1>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· 보호출산제

- (의료기관 출생통보제)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  
\*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국회 통과 (23.6.30.)
- (보호출산제) 출생통보제 도입시 우려되는 위기임산부의 의료기관밖 출산과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
\*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안 국회 통과(10.6.)

기간	소계	지자체			확인완료		소계	수사의뢰 (지자체 → 경찰)		
		생존 확인(771)			사망	의료 기관 오류		경찰 수사(1,095, 7.14. 기준)		
		출생신고 완료	출생신고 예정	해외출생 신고				수사 중	수사 종결	
								생존확인	사망*	
'15. ~'22.	1,028	704	46	21	222	35	1,095	814	254	27
'23. (1월~5월생)	120	92	19	2	6	1	24	15	8	1
'23 (6~12월생)	32	11	9	5	6	1	13	12	1	-

3) 충북 '유령 영아' 수사 의뢰 46건으로 늘어...11건 종결처리 (연합뉴스, 2023. 7. 7.)

- 이에, 본 조례안은 경제적·심리적·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출산·양육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과 출생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사업 추진, 협력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 검토

### ○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. (안 제1조)

- 본 조례안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통해 안전한 출산을 돕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### ○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. (안 제2조)

-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인 “위기임산부”는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<sup>4)</sup> 중 경제적·심리적·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, “위기영아”는 위기임산부의 자녀로 부모의 경제적·심리적·신체적 문제로 인해 원가정에서 양육 및 보호되지 못하는 2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음.

이 외 용어에 대한 정의는 집행 과정상 명확성과 법 체계성을 위해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상 용어의 정의와 통일을 이루고 있으므로, 적절하다고 보여짐.

---

4) “임산부”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.

○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 (안 제3조)

- 해당 조항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해 그 자녀인 위기영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규정으로,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○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함. (안 제4조)

-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,  
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·정보제공과 필요 서비스 연계를 비롯해 위기영아에 대한 상담·정보제공 및 보호조치를 연계,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 전화 운영 그리고 의료서비스 연계 등을 명시함.
- 이러한 근거 규정을 통해 위기임산부가 출산 및 양육을 준비하며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개별 사례에 맞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.

○ 지역상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대해 규정함. (안 제5조)

-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.  
충북도에서는 지난 6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(수행기관: 새생명지원센터)을 운영하고 있음.

## <참고 2> 위기임산부 · 위기영아 상담기관 현황

- 사업기간 : 2024. 6. ~ 12.
- 사업비 : **85,350천원**(국비 68,280<sup>80%</sup>, 도비 17,070<sup>20%</sup>)
- 수행기관 : **새생명지원센터**(청주시 청원구 소재)
- 사업내용
  - (위기임신 상담) 임신 · 출산 · 양육지원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
  - (보호출산 지원) 보호출산 신청 · 접수, 비식별화 조치
  - (아동보호 지원) 아동의 보호에 관한 상담 · 정보제공, 보호조치 연계
  - (기록관리 지원) 부모 인적사항, 건강상태 등을 출생증서로 작성



### ○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. (안 제6조)

- 안 제6조에서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을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### ○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해 규정함. (안 제7조)

- 안 제7조에서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상담 등 지원

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 누설하지 않도록 명시하여, 임신부 및 영아의 권리 보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.

○ 위기임산부 상담 및 지원 업무의위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.  
(안 제8조)

-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을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」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 및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.
- 특히, 관련 법령인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이 지난 7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, 이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, 법적·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해당 조례가 제정된다면 위기임산부와 관련된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영아 유기의 예방 및 임신부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